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3. 기타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단서 중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를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로 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교원전체회의"를 "교직원 전체회의"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 단서 중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을 "잔여 임기가 3월 미만

인 경우"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학부모 및 교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를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로 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중 "연10회"를 "연8회"로 하고, "연30일"을 "연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로 한다.

안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용료의 징수)①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또는 분원별로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안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6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제한등)"을 "(사용제한)"으로 하며, 제6조 본문 중 "원장은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에 퇴소한 경우 또는 파오납한 경우에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7조(변상책임) 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부과 징수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것으로 본다.

별표의 제목을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징수한도액”을 “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기준 및 금액”으로 한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사용료’라 함은 학생교육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식비, 간식비, 숙박비, 일반경비를 말한다.

② ‘일반경비’라 함은 교재대 등 부수되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 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또는 분원별로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에 퇴소한 경우 또는 과오납한 경우에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

제6조(사용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2. 사용자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자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변상책임) 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부과 징수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것으로 본다.

[별 표]

학생교육원사용료 징수 기준 및 금액
(단위 : 원)

구분	단위 (기준)	금액	비 고
식 비	1인 1식	2,700	
간식비	1인 1일	1,300	해당되는 경우에만 징수
숙박비	1인 1일 (1실10명 기준)	2,000	실당 기준인원 미달시는 실당 20,000원 기준으로 1인당 금액 산출
일반 경비	1인당	2,700	해당되는 경우에만 징수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